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51
----------	-------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노웅래 · 김승남 · 김민석
이동주 · 양기대 · 황운하
임호선 · 민형배 · 서영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문자·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생략)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u>정당한 편의</u>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u>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